

# 제8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19.5.7.(서면심의)

## 안건명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85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

### 【주요 심의내용】

- 강풍 등 기상상황 악화시 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
- 보행자가 한강대교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고려하고 긴급 상황시 대피 및 구급하는 방안을 제시 하도록 할 것
- 구조물 설계관련 「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」 을 참고하여 ‘공법검토’ 및 ‘구조설계’ 항목을 추가할 것
  - “상부구조의 처짐,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, 기초구조의 지지력, 변위 등을 검토한다.” 등
- 기존 교각에 대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성과품 작성에서 ‘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설계에 대한 내용’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
- 신소재·신공법을 사용한 구조물 설계시 현 건설 여건에 부합하고 시공성도 확보되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
-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(SMCS, 2018년 개정)를 적용하고, 시공 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도록 할 것

첨부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# ○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부분에서 생산된 지반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반조사에서 '공간정보담당관 제출'은 삭제하고, 기존 지반조사 자료 활용 관련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(p22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(한글, 워드, PDF, CAD 등)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.</li> <li>⇒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'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'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 형식(한글, 워드, PDF, CAD 등)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내진설계 자료 요약서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계보고서, 구조계산서,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것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근거: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, 기술심사담당관-10025('16.6.7.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(SMCS, 2018년 개정)를 적용하도록 하고,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(KCS)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작성도록 할 것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시방서 작성시 시공편의를 위한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할 것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현장활용서 작성시 서울시 전문시방서 부록(현장활용서) 참고하여 작성</li> </ul> </li> <li>- 성과품목목록 : 공사시방서 → 공사시방서(현장활용서 포함) p62</li> </ul> </li> <li>○ 제4절 구조물 설계 관련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(토목편)을 참고 하여 '공법검토' 및 '구조설계' 항목을 추가할 것(p37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법검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계획시설물의 규모, 구조물 형식, 위치 및 지형지질,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,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성여부,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계획한다.</li> <li>▶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·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.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하천 또는 해상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.</li> <li>- 구조설계</li> <li>▶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.</li> <li>▶ 산출된 최대단면력(휩모멘트, 축력, 전단력, 비틀음 모멘트)에 대한 안전성, 내구성, 사용성 등을 검토·확인한다.</li> <li>▶ 상부구조의 처짐,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, 기초구조의 지지력, 변위 등을 검토한다.</li> <li>▶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.</li> <li>▶ 받침부와 상하구조를 연결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.</li> <li>▶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.</li> <li>▶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에 따라 주철근 조립도를 작성하며 시공시 사용상세도를 작성한다. 등 ※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용역관리편람(토목편) p69 참고 작성</li> </ul> <p>○ 제5절 배수시설 설계 관련 아래 설계강우강도 내용을 추가할 것(p39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18.1.22. 수립된 『2030 하수도 정비기본계획』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추가</li> <li>▶ 재현기간 10년: 강우강도식 <math>\frac{586.5237}{t^{0.4621} + 1.1235}</math>, 확률강우량 75.6mm</li> <li>▶ 재현기간 30년: 강우강도식 <math>\frac{993.3199}{t^{0.5162} + 2.4809}</math>, 확률강우량 92.9mm</li> </ul> <p>※ 도로교 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) p2-17 및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(토목편) p66 참고</p> <p>○ 기술심의 요청시기가 설계 준공 2개월 전으로 되어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는 ‘기본설계 완료시점’이므로 수정할 것(p9)</p> <p>○ 지반조사 표준관입시험의 시험회수는 1.5m마다 1회에서 1m마다 1회 실시로 수정할 것(p25)</p> <p>○ 적용기준은 최신기준으로 할 것(p14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교 설계기준(국토교통부, 2010) → 도로교 설계기준(한계상태설계법, 2012)</li> <li>-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2009) → 서울시 전문시방서(2018) 등</li> </ul> <p>○ 남측 북측의 연결로에서 보행자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동동선 등을 계획하고 보행교에 다중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한 구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계할 것</p>	추가의견
--	--	------

	<p>○ '4.6.1 일반사항'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(p4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로등 설치 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심의대상 시설일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</li> <li>- 전력부하계산서, 조도계산서(시뮬레이션 포함), 전압강하계산서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결과를 설계도서에 적용하여야 한다.</li> <li>-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,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을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</li> <li>- 이외회도에 따라 지하차도 조명을 제이힐 수 있는 조명제어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. ⇒ 공중보행길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조명제어장치를 계획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p>○ '4.6.2 관련규정'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(p4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</li> <li>-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</li> <li>- 전기설비 기술기준, 내선규정 ⇒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, 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</li> </ul> <p>○ '4.6.3 도로이용자 고려사항'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 (p4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 ⇒ 조명설계는 보행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</li> <li>-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⇒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</li> <li>- 보행로와 관계없는 문구 삭제 할 것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횡단보도 부근에서 조명기구의 배치·배열은 횡단 중 및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의 상황을 자동차 운전자의 확인이 용이 하도록 할 것</li> <li>5.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의 폭, 구배 등을 고려하여 도로 및 구조물,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</li> </ol> </li> </ul> <p>○ '4.6.4 전기설비 1. 수변전설비'에 아래사항을 수정 및 추가할 것 (p4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인입이 쉬운 곳으로 결정한다.</li> </ul>
--	---

	<p>⇒ 수전 지점은 부하의 중심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수전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전력측과 협의 후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‘4.6.4 전기설비 5. 분전반’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(p4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전반에는 분기회로별로 인체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(30mA 0.03초)를 계획하고, 기준치 이하의 전압강하와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이 없도록 설계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‘4.6.4 전기설비 9. 기타사항’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(p4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행자의 방범 및 안전을 고려한 CCTV 등의 감시 서비스를 가능한 사각 시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비상방송을 위한 스피커 설치와 비상벨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</li> </ul> </li> </ul>
조경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“4.13.2 녹지대(수림대) 식재설계“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(p4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5. 경관과 심미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목의 기화기를 고려하여 식재 계획한다.’</li> <li>- ‘6. 녹지대 내에 일정거리 간격으로 가뭄시 급수작업을 위한 관수시설(QC 벨브 등) 및 빗물침투시설 설치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.’</li> </ul> </li> <li>○ “4.13.3 구조물 벽면녹화 설계“에 아래 내용을 보완할 것(p4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4 ‘~화단조성이 어려운 곳은 식생매트~’ ⇒ ‘~화단조성이 어려운 곳은 수직정원, 식생매트~’</li> <li>- ‘6. 벽면녹화는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담쟁이, 출사철 등의 상록성 지피류를 혼합 식재한다.’</li> </ul> </li> <li>○ “4.13.4 식재지반설계“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(p4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7. 인공지반에는 고열, 바람,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한다.’</li> <li>- ‘8. 인공지반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및 식물뿌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근조치하여야 한다.’</li> <li>- ‘10. 녹지의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식재수목에 토양수분이 적정량 공급되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 조성계획에서 검토해야 한다.’</li> </ul> </li> <li>○ “4.14.1 기본방향“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(p48)</li> </ul>

	<p>- “7 “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”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설계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.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 자문회의 구성시 조경분야 전문가로 ‘서울시 공공조경가’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</li> </ul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9년 5월 일

심의위원 :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

본 검토서는 2019.5.2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# ○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교통	<p>1. 과업내용서에 추가시키는 방안 검토</p> <p>(1) 바람이 강해서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상상황에 따른 백년다리 통제기준 검토 및 제시가 과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</p> <p>(2)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백년다리의 이용수요를 고려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수직이동시설이 현재 확보된 1개(자전거길 수직연결시설)로 충분한지 검토 바람</p> <p>(3) 설계공모 지침에 보행수요 예측을 통해 교통약자편의시설 추가 설치방안 검토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</p> <p>2. 백년다리 조성 국제현상설계공모 지침서 수정 검토</p> <p>(1) 국제현상설계공모사업 채점표에서 지금보다 기술적/구조적 안전성 뿐 아니라 백년다리는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</p> <p>3. 오탏수정 : 광통</p>	
종합의견	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</p> <p>*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19년 4월 30일

심의위원 : 이 경 아 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본 검토서는 2019.5.2.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**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**

### **○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**

분야	검토의견	비고
	<p>1. 목차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각 장 및 절의 페이지가 맞지 않으므로 일치시키기 바람</li><li>• 제4장 제10절 녹지연결보 설치의 내용이 누락된 것인지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</li></ul> <p>2.(1쪽) 과업의 개요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시·종점부의 연결(처리)에서 과업의 규모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분명히 제시하기 바람</li><li>• 공중보행길이 한강대교의 부대시설물인지, 별개시설물인지를 명확히 하여 용역발주하기 바람</li><li>• 한강대교 상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접근금지토록 하는데 혹시 더 가능하도록 건설되는지 검토하기 바람</li><li>• 일반 교량에 공중보행길을 설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</li></ul> <p>3.(4쪽) 1.3.5 과업기간 산정 시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공정보고 일정 및 설계자문과 관련한 소요일정 혹은 주52시간 근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</li></ul> <p>4.(14쪽)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적용기준 및 시방서가 가장 최근 혹은 이름은 맞는지 확인하기 바람</li><li>• 1. 4. 5. 6. 9. 19. 등은 연도 확인</li><li>• 2.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로 수정</li><li>• 12.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(2017. 11)로 확인하기 바람</li><li>• 설계가 끝나기 직전에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적용여부를 명확히 언급(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및 설계비 추가 반영 혹은 설계는 변경하지 않는다. 등)하기 바람</li></ul> <p>5.(32쪽) 3.4.2, 4 내진설계(3.5.3, 3.7.2)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내진설계가 공중보행길에만 해당되는 것으면 전체 교량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언급하기 바람</li></ul> <p>6.(33쪽) 3.5.6 공사비 산출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기본설계의 공사비 산출시(3.5.5, 8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)에서</li></ul>	

	<p>“개략공사비”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공사물량의 누락이나 잘못 산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‘실시설계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.’라고 표현하기 바람</p> <p>7.(34쪽) 3.7.5 “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와 다르게 변경되어”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르게 변경되는 사유 혹은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기 바람(예, 공종변경으로 공사비 혹은 시공방법 변경, 신기술적용 항목 변경 등)</li> </ul> <p>8.(35쪽) 4.1.4 암석의 분류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암석 혹은 암반의 특성은 서울시 지반조사편람을 참조하여 사용하도록 명기하기 바람</li> </ul> <p>9.(36쪽) 4.2.2 포장두께 결정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 용역에서 놓길깊이를 짐도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바람</li> </ul> <p>10.(37쪽) 4.4.1 교량에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중보행길 설치 후 한강대교의 구조 안전성 및 내진설계도 검토하기 바람</li> </ul> <p>11.(37쪽, 38쪽) 본 과업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불필요한 내용(조항)은 확인 후에 삭제하기 바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량은 200년 이상의 홍수빈도를 고려하며 설계 한다</li> <li>• 기초형식, 액상화 등의 표현(본 용역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함)</li> </ul> <p>12.(50쪽) 보고서의 모든 표현은 한글(영어 표현) 사용을 원칙으로 표현하기 바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예) JOINT, JOINT FILLER, span 등등</li> </ul>	
종합의견	(조건부채택)	

2019년 5월 일

심의위원 : 황제돈 가(서명)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I. 설계공모 규정	<p>1. 백년다리의 계획을 위한 제한사항(폭원, 연장) 통일 필요            p.1(3). 공모 대상지 및 공모범위에서는 공모범위를 “구역1 - 한강대교 남단 아치교 사이(10.5m(폭) x 500m(길이)이상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, p.8 에서는 “공중보행로 폭 10.5m미만, 길이 500m가량” “폭원은 10.5m 미만 뼈위 안에서 기존 아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.”로 설계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음</p> <p>2. 과업기간이 설계공모지침서와 과업내용서가 상이함            설계공모지침서(p.1)상에는 착수후 4개월로, 과업내용서는(p.4)에는 5개월로 표기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함</p>	
II. 설계 지침	<p>3. 노량진고가차도 존치구간의 폭원 조정필요            설계공모지침서(p.9)에는 “존치되는 구간은 폭7.5m”로 표기되어 있으나, 그림상에는 폭 15m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함</p>	
III. 설계공모 일반규정	<p>4. 설계설명서 제출부수 확인 필요            - (p.3) 10. 제출물 [설계설명서] - 20부            - (p.14) 4.5 PIN번호 및 도판번호 기재방법 - 15부</p> <p>5. 2차 심사 일정 확인 필요            - (p.3) 2차 심사 - 2019. 7. 23(화)            - (p.19) 2차 작품심사 - 2019. 7. 26(금) 예정</p>	
과업 내용서	<p>6. (p.57) “5.2.5 2항”에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코드화 체계에 의거 공사시방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내용 수정이 필요함</p>	
종합의견	조건부 채택	

2019년 5월 일

심의위원 : 정 공래

본 검토서는 2019.5.2.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**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**

### **○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**

분야	검토의견	비고
도로	<p>1. 기존교각을 활용한 공중보행교로 특히 보행약자를 배려한 무장애시설로의 설계가 돋보여 좋습니다.</p> <p>2. 기본방향의 안전성에서 보행자가 한강대교로 넘어갈수 없도록한 안전장치 필수 조성과 공중 보행교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상황시 보행자의 대피 및 구급상황 대처에 좀 더 자세한 대책을 계획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.</p>	
종합의견	(원안채택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	

2019년 5월 2 일

심의위원 : 송은정 (서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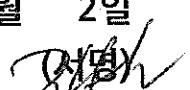
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# ○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	<p>1. 설계공모 지침서 중 I.설계공모 규정 - 3.예정 설계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개월 명시되어 있으나 8.공모일정에는 현장설명일로부터 작품 제출일까지 2개월도 안됨(5월9일 ~ 7월2일)</p> <p>2.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1장 일반사항 - 제3절 과업의 개요에서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, 공사 발주 예정시기: 2020년 1월로 되어 있으므로 조정 필요</p> <p>3. 제1장 일반사항-제3절 과업의 개요에서 1.3.3 과업의 범위 중 '교통처리 실태 조사 등 경부고속도로의~' 항목 삭제</p> <p>4. 제1장 일반사항-제4절 일반사항에서 1.4.8 디자인 심의(자문)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, 사업설명회 등 중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기본설계 완료 시점 이전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심의시기를 실시설계 완료 시점 이전에 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디자인 심의(자문), 설계 자문 등이 시간과 설계가 미흡하여 받을 수 없음. 하기 3항 기술심의 항목과 배치됨</p> <p>5. 제4장 실시설계-제4절 구조물 설계-4.4.1교량-3.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에서 '녹지이동로는~' 제6절 기전설비 설계-4.6.1 일반사항-10항에서 '양재고개~', '제15절 생태조사'은 삭제요망</p> <p>6. 제4장 실시설계 지침 P35부터는 백년다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으므로 수정 요망</p> <p>7. 공사 기간에 대한 산정 검토 항목 추가 요망 주 52시간, 미세먼지, 폴염 등을 고려한 공기 산정 검토 필요</p>	
종합의견	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	

2019년 5월 2일  
심의위원 : 하 진 철 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# ○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비고
	<p><b>과업내용서</b></p> <p>1. 19쪽 제2절 조사내용 2.1.1현지답사 1.현지답사 및 조사 제시된 물리적인 조사 외에 유사한 보행로의 이용행태/동선 분석 및 추 후 보행로를 이용할 시민(용산,노량진일대 및 서울시민)의 행태 및 선호 도 조사가 필요하다 첨가요망</p> <p>2. 31쪽 제1절 기본계획검토 3.1.2 주변 한강공원 및 노량진 일대 공원과 연계한 공원 및 녹지체계를 고려 하여야하므로 <u>공원 및 녹지체계</u> 검토 첨가요망</p> <p>3. 37쪽 제4절 구조물 설계 4.4.1 3.본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공모를 통한 국.내외 기술자가 신소재/신공법을 사용한 실시설계시 현 상황과 상이하고 시공의 질을 보장 못할 경우 디자인이 변경되는 구 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시공사례와 경험 등을 겸비한 업체선정이 되도록 고려할 것</p> <p>4. 47쪽 13절 조경설계 4.13.2 녹지대식제설계 4.14.3 구조물 벽면 녹화설계 <u>인공지반 식재시 근부발달 및 생육이 빠른 수종은 지양한다</u> <u>벽면에 특수공법적용시 유지관리 유리한 소재를 선정한다</u> 첨가요망</p> <p>5. 48쪽 14절 시설물 설계 4.14.1 기본방향 <u>모든 시설물 설계시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 계획이 우선되며 이동 시/시설이용시 불편함이 있도록 설계하여야한다</u> 첨가요망</p> <p><b>설계공모지침서</b></p> <p>1. page 10 3.기본설계지침 3.1기본방향 • 한강 주변 구조물은 서울시민 모두가 향유하여야 할 풍광의 장소이므 로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올 경우 한강이용자와 용산방면(강변북로 포함), 동작방면( 88도로 포함)에서의 지역의 역사성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한 구조물로 설계되어야 한다 첨가요망</p>	
종합의견	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	

2019년 5월 1일

심의위원 : 변금옥  (서명)

본 검토서는 2019.5.2.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# ○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건축구조	<p>1. 오기 수정 및 문맥 맞춰 문구 수정 검토바람.</p> <p>(1)[1쪽] 1.3.3 과업의 범위 ○ 공통처리 실태조사 -&gt; 교통처리 실태조사 : 오기 수정</p> <p>(2)[1쪽] 1.3.3 ○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여건을 감안한 설계 검토 → 본 보행교는 경부고속도로와는 직접 상관 없으며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와 인접 위치함. 도로명이 적정한지 확인바람.</p> <p>(3)[2쪽] 1.3.4 과업의 기본방향 ○ 한강 조망공간, 다양한 체험을 즐길수 있는 공간,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500m이상의 보행교 구간 동안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 적용 → 500m이상의 보행교 구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한강조망공간,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,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</p> <p>(4)[2쪽] ○한강대교(아치구조물)와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여,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한강대교와 보행교가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다리 디자인 적용 → 한강대교(아치구조물)와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여,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한강대교와 보행교가 미관적으로 아름다운 다리 디자인 적용</p> <p>(5)[2쪽] ○본 사업과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노들 보행육교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설계 → 본 사업과 별도사업으로 진행되는 노들섬 보행육교에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</p> <p>(6)[2쪽] -노량진고가차도 존치구간 ○보행교의 시점이나 노들섬의 정문 개념의 디자인으로 적용 → 보행교의 시점이므로 노들섬의 정문 개념 디자인 적용</p> <p>(7)[2쪽] ○시설 및 조경계획 - 야간 이용객의 안전 시설 등이 고려 → 야간 이용객의 안전 시설 등을 고려</p> <p>(8)[2쪽] ○시설 및 조경계획 -미세먼지 등을 고려하여 조경 혹은 설비를 통해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→ 조경 혹은 설비를 통해 미세먼지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</p> <p>(9)[3쪽] ○안전성 - 구조물 상부 이용자와 하부 통행에 안전한 계획이 되어야</p>	

	<p>한다. 구조물 하부로의 낙상과 하부차량 통행에 대한 투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그 구조와 미관이 전체 구조물의 디자인 통합 필요  → 구조물 상부 이용자와 하부 통행에 안전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.  구조물 하부로의 낙상과 하부차량 통행에 대한 투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그 구조와 미관이 전체 구조물과 통합 디자인 필요</p> <p>2.[14,15쪽] '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'에서 주요한 기준은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수정 바람.(도로교설계기준, 콘크리트 표준시방서,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)</p> <p>3. '제4절 구조물 설계'는 본 과업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바람.</p> <p>(1) 4.4.1 교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- 녹지이동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므로~  → 보행육교는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므로~</li> <li>② - 상부구조는 생태통로와 산책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며, 산책로와 생태통로는 상호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  → 산책로와 생태통로는 본 과업과 관련 없음. 전체 문구를 본 프로젝트에 맞춰 수정 바람.</li> <li>③ 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보행교의 3등교 수준의 하중을 추가로 명기하는 것을 검토바람.</li> <li>④ 보행교는 기존교각에 지지되어야 하므로 기존교각의 안전확인 및 기존구조물 보강 최소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바람.</li> </ul> <p>(2) 4.4.2 용벽설계 : 본 프로젝트에 용벽이 필요한지 확인바람.</p> <p>(3) 4.4.3 기초설계 : 기초로 기존 교각을 이용하는 곳과 노량진 고가차도 구간, 노들섬 보행육교구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을 검토바람.</p> <p>(4) 기존교각에 대한 보수, 보강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바람.</p> <p>4.[50~55쪽] '제5장 성과품 작성'에서 5.2.2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기존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및 보강설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 바람..</p>
종합의견	(조건부 채택)

2019년 5월 2 일

심의위원 : 김 현 아 (雅)

본 검토서는 2019.5.2.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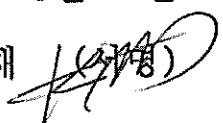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- 안건명 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전기	<p>1. 시민을 위한 백년 다리를 건설함에 있어서 시계절 시민의 보행을 위해 만드는 건설이므로 겨울에도 시민의 보행 이동이 많은 비탈면 상부 및 중간 소단, 도로, 보도 포장지역 등에 겨울 강설시 전기전열 시설로 제설할 수 있는 안전 설계를 검토요망.</p>	
종합의견	(조건부채택)	

2019년 5월 2 일

심의위원 : 이 원재



본 검토서는 2019.5.2.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- 안건명: 백년다리(한강대교 공중보행길)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토의견	비고
안전관리	별도 추가의견 없음	
종합의견	원안채택	

2019년 5월 1 일

심의위원 : 서 경숙